

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('26년 4월)

-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보여줘도 되나요? -

2026. 5. 28. / 저작권상담팀(☎ 1800-5455)



본 이미지는 생성형 AI(Google Gemini)를 통해 생성하였습니다.

□ 4월 주요 상담사례

○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영화를 보여줘도 되나요?

-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제한된 시설이 아닌 곳에서, 관람료 등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, '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'을 재생하여 보여줄 수 있다.
- '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'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'공연' 행위에 해당하고 원칙상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.
- 다만,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.
- 따라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람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, 저작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행된 DVD, 블루레이(Blu-ray),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.
- 그러나 이러한 비영리 공연이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장소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공연을 할 수 없고(시행령 제1호~제7호), 특정 시설에서는 DVD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(시행령 제8호).

- 예를 들어, 시행령 제1호의 시설인 커피 전문점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, 제8호의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‘DVD 등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상저작물’을 이용해야만 공연이 가능하다.

■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·방송)
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저작권 용어 풀이

○ 공연

- ‘공연’은 저작물 또는 실연·음반·방송을 상연·연주·가창·구연·낭독·상영·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,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(전송을 제외한다)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(저작권법 제2조).
- ‘공중’은 불특정 다수인(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)을 의미한다. 여기서 ‘불특정 다수인’이란 함은 그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 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않은 2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- 저작권법상 공중에는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도 포함되기 때문에, 상호관계가 있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다수라면 공중에 해당할 수 있다. 예를 들어, 사내 운동회에서의 공연과 같이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저작물 공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공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.
- 반면,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 친밀한 소수의 사람들이 저작물을 감상하거나 직접 실연하는 것은 ‘불특정 다수인’ 혹은 ‘특정 다수인’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공연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. 따라서 5~6명 정도 소수의 동아리원들과 동아리실에서 연극연습을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.
- 참고로, 공중을 대상으로 저작물 등을 공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할 것이나,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인 저작권법 제29조(비영리공연)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 ‘챗봇’을 통해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* 챗봇: <https://chatbot.gov.kt-aicc.com/client/GCL-01-C-00000221-0001/chat.html>



한국저작권위원회가 창작한 ‘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(‘26년 4월)’ 저작물은 ‘공공누리’ 출처표시-상업적 이용금지-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공유마당(<https://gongu.copyright.or.kr/>)의 ‘경기도, 경기천년바탕체R’ 글꼴로 작성